##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5

제출년월일: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신설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1개) 및 기존 한시기구(3개)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

- (신설) 한강사업추진단 신설
  -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 신설('23.7.17. ~ '24.7.16.)
- (연장) 주택공급기획과·균형발전기획과·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 존속기한 1년 연장('23.8.19. ~ '24.8.18.)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3. 5. 19. ~ 5. 23.)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2133-6729)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 한강 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 3.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

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23년 8월 18일"을 "2024년 8월 18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4항의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한시기구) ① ~ ③ (생	제21조(한시기구)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
	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
	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
부 칙 <제8448호, 2022.8.8>	부 칙 <제8448호, 2022.8.8.>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조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	
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23년 8월 18일</u> 까	<u>2024년 8월 18일</u>
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